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임, 감액 가능 - 몇 가지 판결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 4 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 398 조 제 4 항에 따라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 2 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398 조 제 2 항의 내용, 즉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즉,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

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

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

580765 판결

계약조항

제13조 (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계약금 일십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25일 제품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월 오백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금액을 지급한 대가로 국내외 제품공급(프랜차이즈) 독점 공급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원고의 발명특허증에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피고 C) 공동발명자와 권리자로 등재를 허락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I 사업장과 차후 이전 사업장에 50:50%의 지분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며 원고는 제품개발과 생산을 피고 회사는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향후 재산 분할시에도 동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아. 원고는 2016. 11. 1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금 10억 원과 2016. 9.부터의 연구비 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D를 무단 반출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위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1. 11.자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

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

금 감액 결정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건농이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억 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인 3억 원(= 5억 원 ×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약사변호사, 면허대여, 2중개설,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전략적총괄대응, 실무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